

업 무 협 약 서

강릉원주대학교와 피트니스 원은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강릉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호간에 교류·협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강릉시민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적, 물적 자원의 교류·협력을 위하여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대방기관의 제반규정을 존중하며, 모든 당사자는 신의를 바탕으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.

제3조(업무협력의 범위) 양 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1. 스포츠 인프라 및 전문 인력, 행정 지원
2. 강릉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, 정보교류 및 시설 등의 활용을 극대화
3. 건강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상호 연구개발 지원
4. 취업 및 현장실습의 정보교류 및 협력
5. 기술·인력·장비의 공동활용 및 교류
6. 정기적 협의회 및 교류회 개최
7. 기타 공동 관심 분야

제4조(기밀유지 의무)

1. 본 협약에 의하여 교환되는 비밀정보 및 문서에 대하여 외부유출 제한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2. 제1항의 보안조치사항은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.

제5조(기타사항) 본 협약서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협력에 필요한 추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당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다.

제6조(해석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7조(효력)

1. 본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, 양측의 합의에 따라 협약서의 내용을 갱신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, 협약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조건은 추후 본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기로 한다.
2. 상호간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협약서를 개정할 수 있다.
3. 본 협약서의 효력은 업무협약을 체결 직후 발생한다.
4. 효력은 1년으로 하되 상호간의 사전 합의하에 자동연장의 의견을 결정한다.

상기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장의 서명(날인)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 년 01 월 05 일

강릉원주대학교
총장 반 선 섭

서명 : 반 선 섭

피트니스 원
대표 이 세 월

서명 : 이 세 월